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(조경태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9324 발의연월일: 2025. 3. 25.

발 의 자:조경태·김소희·곽규택

서천호 · 김상욱 · 김예지

김용태 · 한지아 · 최은석

서명옥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내란·외환의 죄, 반란·이적죄,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특정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이미 낸 기여금에 이자를 가산한 금액만 지급하고 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공무원이 살인이라는 중범죄를 저질러 파면 처분을 받는 경우에도 최대 50%의 감액된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어 국민의 법 감정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재직 중의 사유로 살인의 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공무원에게 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,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이자가 가산된 금액만을 반환하려는 것임(안 제65조제4항).

법률 제 호

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공무원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5조제4항 중 "「군형법」"을 "제24장(살인의 죄), 「군형법」"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퇴직급여 등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) 제6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
이 법 시행 이후 형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5조(형벌 등에 따른 급여의	제65조(형벌 등에 따른 급여의
제한) ① ~ ③ (생 략)	제한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④ 재직 중의 사유로 「형법」	4
제2편제1장(내란의 죄), 제2장	
(외환의 죄), <u>「군형법」</u> 제2편	<u>제24</u> 장(살인의 죄), 「군형
제1장(반란의 죄), 제2장(이적	법
의 죄), 「국가보안법」(제10조	
는 제외한다)에 규정된 죄를	
지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	
경우에는 이미 낸 기여금의 총	
액에 「민법」 제379조에 따른	
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하	
되 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.	